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6 (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)

① 법 제21조의5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아 사교육비 규모에 관한 사항
2.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유아 사교육 수강목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유아 사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현장 방문 면접, 전화, 우편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6 (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)</u> <u>①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</u> <u>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유아 사교육비 규모에 관한 사항</u> <u>2.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유아</u> <u>사교육 수강목적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유아 사교육에 관한 사항</u> <u>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사항</u> <u>②실태조사는 현장 방문 면접, 전화,</u> <u>우편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</u> <u>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③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</u> <u>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	
연 락 처	(044) 203 - 7031, 7034